

일반대학원 치의학과 교육과정시행세칙

2024.03.01.

□ 학과명 : 치의학과

- 제1조(목적) ① 이 시행세칙은 상기 대학원 학과의 학위 취득을 위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취득에 관하여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내규에서 정한 사항 및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교육목표) 학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우수한 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의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 기초 치의학 및 인접 학문을 이해하여 임상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다

제3조(진로취업분야) 학과의 진로취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 치과/치의학 분야 전공의-임상의사
- 생명과학관련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최소 학점 이수요건인 학과 교육과정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기본구조표)

과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	최소 수료(졸업) 학점	비고
석사	9학점		6학점	24학점	공통과목(통합강의, 연구집담회) 6학점 필수 이수
박사	15학점		6학점	36학점	공통과목(통합강의, 연구집담회) 6학점 필수 이수
석박통합	24학점		6학점	60학점	공통과목(통합강의, 연구집담회) 6학점 필수 이수

제5조(교과과정)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 교과과정 :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참조
- 교과목개요 : <별표2. 교과목 개요> 참조

제6조(선수과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해야할 선수과목은 해당 전공교실별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대상자 : 전공명 상이 혹은 비 동일계열 및 학과에서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수과목 이수학점 :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인정서에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공통과목 이수) 대학원에서 전체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통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수료(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입학전 이수학점 및 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입학 전 동등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및 국내외 타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등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9조(타학과 과목 인정)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소속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

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수료)

-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칙, 내규 등 상위규정에서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 ② 선수학점 이수 대상자는 규정된 선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타학과 및 공통과목으로 인정되는 학점은 위의 각 조에서 규정한 학점만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1조(졸업) ① 제10조와 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논문게재요건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제12조(학위자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석사과정은 학위자격시험을 2과목(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 학위자격시험1),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학위자격시험을 3과목(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 학위자격시험1, 학위자격시험2)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석사과정의 학위자격시험 과목 중 학위자격시험1은 구강생물학1로 한다.
- ③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위자격시험 과목 중 학위자격시험1은 구강생물학1로 한다. 학위자격시험2는 구강생물학2로 한다.

제13조(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 ① 공개발표 신청자격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공개발표의 심사기준은 합격, 보완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 ③ 공개발표의 심사내용은 연구목적과 의의에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문헌 활용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표현성,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 등으로 평가한다.
- ④ 공개발표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서 및 심사위원장 심사의결서로 한다.
- ⑤ 최종심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고 심사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사지 양식은 <붙임3>과 같다.

[부칙1]

- ① 시행일 : 2014.3.1
- ② 경과조치 :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2]

- ① 시행일 : 2016.3.1
- ② 경과조치 :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3]

- ① 시행일 : 2018.3.1
- ② 경과조치 :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4]

- ① 시행일 : 2020.3.1
- ② 경과조치 :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5]

- ① 시행일 : 2020.9.1
- ② 경과조치 :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제13조 학위자격 시험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6]

① 시행일 : 2021.3.1

② 경과조치 :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제12조 학위자격시험은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7]

① 시행일 : 2022.03.01.

② 경과조치 : 제12, 13조

가. 2022학년도 교육과정시행세칙의 "학위자격시험은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나. 학위자격시험은 공개발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다. 학위자격시험 대체자는 기 취득한 공개발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칙8]

① 시행일 : 2023.03.01

② 경과조치 :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학과 회의를 거쳐 학과장 승인하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9]

① 시행일 : 2024.03.01

② 경과조치 : 교육과정이 입학 이후에 개편되었을 경우 입학 이후 모든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수 구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